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 부적정

기 관 명 동래구, 기장군

내 용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
인은 이사 7명 이상,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,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
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현원을 확인한 결
과 동래구 “사회복지법인 지원” 등 2개 법인은 아래 【표 1】 과 같이 감사 정수
에 미달하고 있었다.

【표 1】 사회복지법인 이사 및 감사 현황

(단위: 명)

구/군	법인명	대표이사	설립일	이사	감사	비 고
동래구	○○○○○○○ 지원	○○○	2009.10.29.	9	0	- 감사 2명 부족
기장군	○○○○재단	○○○	2012.08.07.	8	0	- 감사 2명 부족

또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
사 정수의 3분의 1이상(2명)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
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, 기장군 “○○재단”은 아래 【표 2】와 같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.

【표 2】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현황

(단위: 명)

구/군	법인명	대표이사	설립일	외부추천이사	비 고
기장군	○○재단	○○○	2009.07.31.	0	- 외부추천이사 3명 부족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, 기장군 “사회복지법인 ○○○”은 아래 【표 3】과 같이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하였다.

【표 3】 사회복지법인 특별관계이사 현황

(단위: 명)

구/군	법인명	대표이사	설립일	이사 현원	특별관계 이사	비 고
기장군	○○○	○○○	2011.06.17.	7	2	- 특별관계이사 1명 초과

조치할 사항 동래구청장, 기장군수는

[시정]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